

정 관

2013. 11. 4. 제정
2015. 2. 25. 개정
2016. 2. 23. 개정
2016. 11. 30. 개정
2017. 2. 22. 개정
2022. 12.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Packaging Recycling Cooperative” (약칭 “KPRC”)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그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 조합의 광고는 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6.2.23.>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제1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연구비 등 지원
3.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홍보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회수·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각종 정보수집 및 통계작성
5. 국내·외 회수·재활용 및 포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지원사업
7. 회수·재활용 제품·기술의 개발, 보급 및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전시관 설립·운영 및 이와 관련한 사업
8.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9.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10.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폐자원 유통체계 구축 및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지원
11. 법 제9조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한 사업
12.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재활용사업 실적 등에 관한 유통지원센터와의 공동조사

13. 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관련 사업
14.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업무 지원
15. 법 제38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수행
17. 회원사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18.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19. 위 사업들의 수행을 위한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20. 기타 조합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재활용 관련 연구 및 연구비 지원사업) ① 조합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발전,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러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연구 및 기술개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수·재활용공제사업) ① 조합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 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 약정서를 제출 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③ 조합은 법 제1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의무생산자

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④ 회수·재활용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회수·재활용공제사업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⑤ 본 조의 회수·재활용공제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8장 분담금 등에서 정한다.

제3장 사 원

제9조(사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공제회원 중 분담금 납부액, 의무대상 품목(포장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개정 2016.11.30.>

② 조합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③ 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0.>

④ 조합의 사원은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사원의 의무) ① 사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조합의 사업과 운영이 설립목적 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③ 사원은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④ 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발생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12조(자격상실) 사원이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회원이 아니게 된 때에는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의2(탈퇴) 사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탈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30.]

제13조(제재)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사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1. 본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본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이사장은 사원의 권리를 정지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사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서 사원의 권리정지 및 제명에 대한 이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사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제9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조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단,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사원이 아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한다.

제15조(신고)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본 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사원에게 있다.

제4장 회 원

제16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 ① 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제회원 : 법 제16조에 따라 회수·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2. 개별이행회원 :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일반회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제품·포장재 관련 사업자, 재활용 관련 사업자, 재활용 제도 또는 기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5.]

[제목개정 2015.2.25.]

제17조(회원 가입) ①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정하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25.]

[제목개정 2015.2.25.]

제18조(회비 등의 부과·징수) ① 조합은 공제회원이 납부하는 분담금과는 별도로, 일반회원 또는 사원이 된 공제회원으로부터 가입비, 회비,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징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9조(회원의 권리) 공제회원 및 일반회원은 조합의 운영 및 분담금 산정, 재활동의무 이행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합이 정한 가입비, 회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그와 동일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발생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21조(탈퇴) ① 회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탈퇴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2.23.>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폐업한 경우
5. 삭제 <2016.2.23.>

6. 삭제 <2016.2.23.>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제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신설 2016.2.23., 2016.11.30.>

1. 제18조에 따른 회비등과 제45조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가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조합과의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본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이사장은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이 제21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 제19조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고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개정 2015.2.25.>

제23조(신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본 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장 임 원

제24조(임원의 구성) ① 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 중 약간 명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상근임원으로 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합의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은 당연직 임원(이사)으로 한다. <신설 2015.2.25., 2016.2.23.>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2.22.>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신설 2017.2.22.>

③ 조합은 제1항에 의한 임원 선임 및 제30조제1항에 의한 별정직이사대우 직원 채용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2.>

④ 임원 중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이사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환경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환경부장관의 취임승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26조(임원의 해임) ① 본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합의 정관,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본 조합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3. 본 조합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때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운영규정(이하 “조합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상근임원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관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 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회의결과에 대한 기명날인하는 일
3.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28조(임원의 보수 등)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본 조합의 「조합 운영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23.>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임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2017.2.22.>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는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사(기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23.>

제30조(직원 및 직제 등) 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은 일반직과 임기제의 별정직이사대우로 구분한다. <개정 2017.2.22.>

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2.22.>

③ 직원의 정수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17.2.22.>

④ 이사장은 예산 및 결산, 주요사업계획,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 자금을 관리·집행한다.

⑤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직제와 직원 수, 보수 등은 「조합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조합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이사장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의 모든 임직원은 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는 재활용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업체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6장 사원총회

제3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본 조합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총회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 운영규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및 해산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출석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제36조(총회 참여제한) 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사원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7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7장 이사회 등

제38조(이사회 구성) ①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2.>

② 조합은 이사회 구성 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이사 정원의 5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3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가입비·회비·경비·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사원의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4조의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간주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2조(참여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44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 조합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분담금 등

제45조(분담금) ① 조합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 회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 공제회원별 분담금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2.23.>

③ 분담금과 관련한 회계는 포장재의 재질별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공제회원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⑤ 분담금과 가산금의 산출, 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2016.2.23.>

제46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등)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7조(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① 조합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재활용공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48조 삭제 <2016.2.23.>

제49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①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공제회원의 재활용의 무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각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각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50조(수입)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재활용분담금
2. 가입비
3. 회비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5.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6.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7. 사업에 수반된 수입

8. 기타 수익금

제51조(수익사업) ① 조합은 제6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2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운용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53조(회계의 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54조(회계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6조(회계감사) 조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57조(세계잉여금) 조합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계획 등) ① 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5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조합의 파산
3.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조합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청산인)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61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의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 자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로 귀속한다.

제62조(회비 등의 반환) 조합은 사원 또는 회원이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63조(표창)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원,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4조(운영규정)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경미한 변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준용) 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3.11.4.>

1.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2013.12.5.)부터 시행한다.
2. 최초 임원의 명단은 [별지 2]와 같다.
3. 최초 사무소는 [별지 3]과 같다.

부 칙 <2015.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3.2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세칙 등에서 정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관에 갈음하여 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3.14.)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세칙 등에서 정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관에 갈음하여 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12.2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세칙 등에서 정관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관에 갈음하여 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3.2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세칙 등에서 정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관에 갈음하여 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12.27.)부터 시행한다.